

「대학의 지역사회 상생·협력 지원」 사업 협약서

2020년도 지역사회 상생·협력 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(이하 “인평원” 라 한다)과 부산외국어대학교(이하 “대학” 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- 사업명 : 다문화 동백(同緖) 프로젝트 (유형: II 컨소시엄형)
- 사업기간 : 협약 체결일 ~ '21. 1월 30일
- 시비지원금 : 금 오천만원정(₩ 50,000,000)
- 대응자금 : 금 일천구백팔십만원정(₩ 19,800,000)
- 협약당사자
 -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장
 - 부산외국어대학교 총장 직무대행(사업총괄책임자 신선중)

제1조(목적) 이 협약은 “인평원” 과 “대학” 이 지역사회 상생·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, 사업의 효율적이고 성실한 수행을 위해 권리·의무·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고, 제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을 둔다.

제2조(사업의 목표 및 내용)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협약서와 「지역사회 상생·협력 지원사업 계획서」(이하 “사업계획서”)와 동일하다.

제3조(사업기간)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4조(사업의 수행) “대학” 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관련 규정·지침 등에 따라 사업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비 지급) “인평원” 은 “대학” 이 지정하는 계좌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시의 예산이나 자금사정,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비 관리) ① “대학” 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,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.



② “대학”은 사업비에 대하여 제3자에게 권리 양도 또는 사업의 재교부 등을 할 수 없으며, 관계 법령·조례·규칙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7조(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) ① “대학”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사업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“인평원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“대학”은 “인평원”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내용을 보완하거나 시정하여야 한다.

③ “대학”은 협약기간 만료 후 지정한 기한까지 이 사업과 관련된 정산보고서를 “인평원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“대학”은 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 등 정산금을 “인평원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⑤ “대학”은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서류를 사업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, 보존기간 만료 전에 “인평원”이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⑥ “인평원”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검사결과 사업비가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사업의 지도감독) ① “인평원”은 “대학”과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지도·감독에 필요한 서류(회계서류 포함)·시설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.

② “대학”은 “인평원”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, 관계서류의 열람,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보고·조사 또는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“인평원”은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, “대학”은 지체 없이 이를 이행 후 그 결과를 “인평원”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협약의 변경) “인평원”과 “대학”은 서로 협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(협약의 해지) ① “인평원”은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- 가. “대학”이 중대한 협약사항 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 곤란할 때
- 나. “대학”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- 다. “대학”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한 때

라. 사업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
마.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말미암아 이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

② 이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“대학”은 이미 수령한 지원금 중 실제로 이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“인평원”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, “대학”은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을 “인평원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③ “대학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등을 할 수 없다.

④ “인평원”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“대학”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제11조(관계법령의 준수) ① “대학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「지방재정법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그 밖에 각종 예산·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② “대학” 및 사업수행 관계자 등이 이 협약의 내용 또는 제1항에 따른 관계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“인평원”은 지원한 보조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12조(신의성실 및 기밀유지) ① “인평원”과 “대학”은 상대방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, 상호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“대학”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·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③ “대학”은 이 사업의 수행 과정 중 “인평원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수행 내용에 관하여 “인평원”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“인평원”과 “대학”은 이 협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각종 정보를 이 협약의 이행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.

제13조(책임) ① “대학”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각종 사건·사고에 대한 책임은 “대학”에 있다.

② “대학”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“인평원”이 제3자로부터 손해 배상 등의 청구(재판상 청구에 한한다)를 받아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“대학”은 “인평원”에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4조(기타) ① “대학” 과 “인평원” 은 사업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이 사업이 “인평원” 의 지역사회 상생·협력지원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.

② 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고자 요청한 공공기관 등에 “대학” 은 사업성과 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15조(해석) ①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협약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“인평원” 과 “대학” 이 협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“인평원” 의 해석에 따른다.

② 이 협약과 관련한 법적 분쟁의 관할은 “인평원” 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16조(효력 등) ① 이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체결한 날부터 발생하고, 협약 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. 다만, 민·형사상의 사건·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·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해당 사건·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.

②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, “인평원” 과 “대학” 은 직인을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0년 07월 09일

부 산 인 재 평 생 교 육 진 흥 원 장 고 영 삼



부 산 외 국 어 대 학 교 총 장 직 무 대 행 정 용 차

